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81
----------	-------

발의연월일 : 2026. 5. 7.

발 의 자 : 정태호 · 박민규 · 곽상언
이정문 · 조정식 · 이정현
박상혁 · 정진욱 · 최기상
진성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대상을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은 현행법에서 벤처투자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율되지 않아 일반 벤처펀드의 수익성 중심 투자 기준에 따라 투자 대상에서 소외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벤처투자의 범위에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 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벤처기업 또는”을 “벤처기업, 소셜벤처기업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소셜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을 말한다.

제13조제1항 중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소셜벤처기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제38조제1항 중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를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6호”로 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제4호까지, 제6호”를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6호”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를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벤처투자조합 등”을 “벤처투자조합 또는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벤처투자”란 창업기업, 중소기업, <u>벤처기업</u> 또는 그 밖에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p> <p>3. ~ 6. (생 략)</p> <p><u><신 설></u></p> <p>7. ~ 13. (생 략)</p> <p>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p> <p>①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u>창업기업과 벤처기업</u>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 략)</p> <p>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①</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벤처기업, 소셜벤처기업</u> 또는----- -----.</p> <p>3. ~ 6. (현행과 같음)</p> <p>6의2. “<u>소셜벤처기업</u>”이란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u>」 제2조제10항에 따른 <u>소셜벤처기업</u>을 말한다.</p> <p>7. ~ 13. (현행과 같음)</p> <p>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p> <p>① ----- ----- ----- -----<u>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소셜벤처기업</u>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①</p> <p>-----</p>

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략)

<신설>

4. ~ 8. (생략)

② ~ ⑤ (생략)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①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① -----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6호-----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

